

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자치법규명: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

나. 예고기간: 2026. 10. 2. ~ 2026. 10. 23.(21일간)

다. 예고방법: 게시판에 공고,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
2026년 9월 30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중 과도한 경쟁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불합리한 사업 활동 제한 규제를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구 수정(안 제4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일부 용어 개선(안 제2조, 제6조 ~ 제8조, 제11조, 제14조, 제16조, 제18조)

4. 자치법규안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3일까지(21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 · 우편 · 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 · 주소 · 생년월일 · 연락처 · 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파주시청 도로건설과(우 10932)

○ 전화 : 031)940-4641 / Fax 031)940-4649 / 이메일 7seung7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견	비고